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('21.1.12. 공포, '21.7.13.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함

3. 주요내용

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공공단체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안 제4조의3, 안 별표2 제2호 가목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,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공공단체의 범위) 법 제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

별표 2 제2호가목을 나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8조제2항제1호	300만원	300만원	300만원
--	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별표 2 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“법 제38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38조제2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“법 제38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38조제2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“법 제38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38조제2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, “법 제38조제2항제2호”를 “법 제38조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 제4조의3 (생 략) 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 1. 일반기준 가. ~ 다. (생 략) 2. 개별기준 <table><tr>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<th colspan="3">과태료 금액</th></tr><tr><th>1차 위반</th><th>2차 위반</th><th>3차 이상 위반</th></tr><tr><td><신설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가. (생 략)</td><td>(생 략)</td><td>(생 략)</td><td>(생 략)</td><td>(생 략)</td></tr><tr><td>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38조제2항제1호</td><td>50만원</td><td>100만원</td><td>200만원</td></tr><tr><td>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</td><td>법 제38조제2항제1호</td><td>100만원</td><td>200만원</td><td>300만원</td></tr><tr><td>라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2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</td><td>법 제38조제2항제1호</td><td>100만원</td><td>200만원</td><td>300만원</td></tr><tr><td>마. 법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</td><td>법 제38조제2항제2호</td><td>50만원</td><td>100만원</td><td>200만원</td></tr></table>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<신설>					가. (생 략)	(생 략)	(생 략)	(생 략)	(생 략)	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제2항제1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38조제2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	라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2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38조제2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	마. 법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38조제2항제2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제4조의3(공공단체의 범위) 법 제 9조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의4 (현행 제4조의3과 같음) 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 1. 일반기준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2. 개별기준 <table><tr>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<th colspan="3">과태료 금액</th></tr><tr><th>1차 위반</th><th>2차 위반</th><th>3차 이상 위반</th></tr><tr><td>가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</td><td>법 제38조제2항제1호</td><td>300만원</td><td>300만원</td><td>300만원</td></tr><tr><td>나. (현행 가목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tr><td>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</td><td>법 제38조제2항제2호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tr><td>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</td><td>법 제38조제2항제2호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tr><td>마. (현행 라목과 같음)</td><td>법 제38조제2항제2호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tr><td>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</td><td>법 제38조제2항제3호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/table>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가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8조제2항제1호	300만원	300만원	300만원	나. (현행 가목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	법 제38조제2항제2호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	법 제38조제2항제2호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마. (현행 라목과 같음)	법 제38조제2항제2호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	법 제38조제2항제3호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위반행위		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차 위반	2차 위반		3차 이상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(생 략)	(생 략)	(생 략)	(생 략)	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제2항제1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38조제2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2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38조제2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법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38조제2항제2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8조제2항제1호	300만원	300만원	3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(현행 가목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	법 제38조제2항제2호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	법 제38조제2항제2호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(현행 라목과 같음)	법 제38조제2항제2호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	법 제38조제2항제3호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95